



성북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**길음2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주민 공람공고**

1. 서고시 2008-504(2009.1.2)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서고시 제2011-108 (2011.4.28.)호, 서고시 제2011-316(2011.10.27.)호 및 서고시 제2014-262(2014.7.17.)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어, 성북구 고시 제2012-159(2012.11.8)호 사업시행인가 및 성북구 고시 제2014-60(2014.4.24.)호로 관리처분인가된 길음2촉진구역과 관련하여,
2.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를 공람,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.

가. 사업개요

- 1) 사업명칭 :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위 치 : 성북구 길음동 498번지 일대 (시행면적 : 104,979.30㎡)
- 3) 시 행 자 :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- 4) 건축계획 : 지하3층/지상39층, 24개동, 공동주택(아파트) 2,3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- 5) 주요변경 내용
 - 2014.4.24. 관리처분시 정비사업비 추산액 반영한 자금계획 변경
 - 평형변경(대형→중·소형)에 따른 세대수 증가 등 건축계획 변경
 - 사업기간 변경(사업시행변경일로부터 60개월이내) 등

나. 주민공람 개요

- 1) 공람기간 : 2015.03.26 ~ 2015.04.09 (14일간)
- 2) 공람장소
 -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 2241-2854)
 -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945-0509)
- 3) 공람내용 : 사업시행변경인가 관계도서
- 4)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
- 5) 공고방법 : 구보게재 및 조합사무실 게시판 게시

- 붙임 1. 공고문(안) 및 공람의견서 1부.
2. 사업시행인가 신청 주요 변경내역 1부. 끝

★주무관

라전희

뉴타운사업2담당 **황인수**

주거정비과장

정택근

도시환경국장

03/24
김장수

협조자 주무관

김하연

시행 주거정비과-3382 () 접수 ()

우 136-706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(삼선동5가) / <http://www.seongbuk.go.kr>
전화 02)2241-2854 / 전송 02)2241-6545 / gio0515@sb.go.kr / 대시민공개